

# 2026년 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 일경험(인턴근로, 현장실습 등) 참여기업 모집 안내

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며, 참여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내 취업으로 연계하고자 일경험(인턴근로, 현장실습 등)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5월 22일  
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장

## 1 사업 개요

### ○ 추진배경

- 기업의 경력 채용 확대로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참여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
- 청년의 일경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필요
- 최근 장기 미취업과 정서적 취약성으로 인해 사회적 진입을 포기하는 ‘은둔·고립’ 청년 문제를 완화하는 주요 경로 필요

### ○ 사업목적

- 취업 연계 시 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참여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목적
- 기업은 인턴근로와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단순히 ‘일자리 제공’을 넘어,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을 깨고 나와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자립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

○ 사업기간: 최대 12개월, 2026년 연중 상시 모집(예산 소진 시까지)

○ 지원대상: 관내 일반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

- (기업) 신청일 기준 창업 1년이상, 상시근로자 수 2명이상
- (기업) 개인별 맞춤형 직무기술 습득이 가능하며, 참가 청년에 대한 업무지도 및 담당자 지정이 가능한 기업
- (청년) 만 18세~39세 이하, 지역자활센터 참여 청년

○ 지원내용:(청년) 일경험 수당(자활급여기준)

○ 지원방법 및 문의: 신청서 등 메일접수

- 메일/연락처: [cwjawhal2025@naver.com](mailto:cwjawhal2025@naver.com) / 070-4136-3341(청년사업담당자)

## 2 사업세부내용

### □ 지원내용

#### 가. 기업체 일경험 지원

- 참여청년 일경험 인건비(자활급여기준) 지원(주5일, 1일 8시간/주차·월차발생)

#### 나. 개인별 맞춤형 인재육성(의무교육 필수)

- 교육방법: 현장직무 및 소양교육 운영

① 현장직무교육: 자격증 교육 및 취득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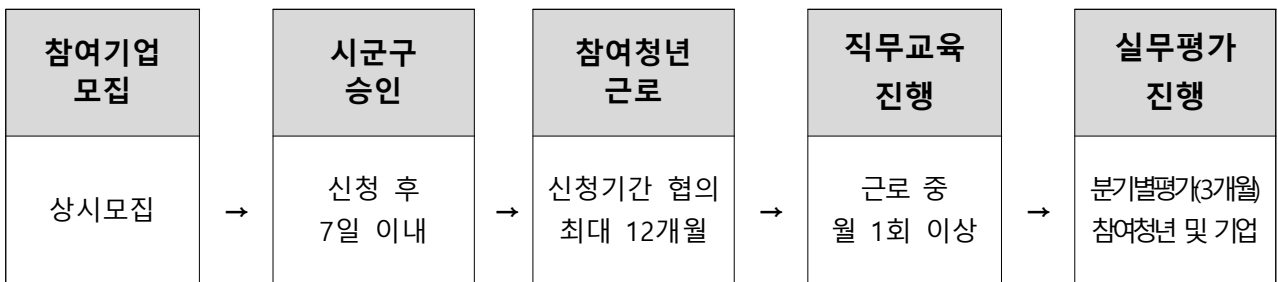
② 직무소양교육: 심리검사, 자기이해, 커뮤니케이션, 문서작성 등

- 추진방법: 월 1회이상, 오프라인 집체교육 운영

#### 다. 기타

- 참여기업-지역자활센터 일경험 계약 체결
- 매월말일 근태현황, 업무내용 제공 등 서류제출
- 참여자의 교육, 자조모임, 행사 등 참여 협조
- 6개월 단위 계약(협의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)

#### 라. 추진체계



※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, 조기 종료 예정

#### 마. 제외사항: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불가

-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  - \* 일반유희 주점업, 무도유희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, 무도장 운영업 등
-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5호의 '청소년유해업소',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\*
  - \* 다만, 숙박업 중 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
-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\* \*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\*
  - \* 공표안 일자로부터(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) 1년간 참여 제한
- 「초·중등교육법」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-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\*
  - \* '23년~'25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-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시군이 일경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(임금체불, 성희롱 발생 기업 등)